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8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증원과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76’을 ‘1,486’으로 개정(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49’를 ‘1,454’로 개정(증 5명)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을 “32”로 개정(증 5명)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2)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1% 이내	7.5% 이상	0.5% 이내

⇒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1% 이내	34% 이내	31% 이내	6.5% 이상	0.5% 이내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3)

- 총 계 : '1,476'을 '1,486'으로 개정(증 10명)
- 일반직 계 : '1,471'을 '1,481'로 개정(증 10명)
 - 일반직 6급 이하: '1,393'을 '1,403'으로 개정(증 10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시행

1)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598,793	-	-	598,793	

2) 세부내역

- 채용인원: 10명(녹지6급 1명, 임기제(행정)7급 4명, 건축7급 1명, 지적7급 1명, 건축8급 1명, 지적8급 1명, 행정9급 1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598,793	
기본급(봉급)	348,678	임기제다급 하한 기준 7~9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18,840	월 직급보조비 (임기제다급 165천원, 7급 155천원, 8·9급 145천원)

국민건강보험금	16,991	보수월액의 3.50% 부담
연금부담금 등	95,602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118,682	- 가족수당 : 4,8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72,769천원 - 정액급식비 : 16,800천원 - 명절휴가비 : 14,297천원 - 연가보상비 : 7,017천원 - 기술업무수당 : 3,000천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76명에서 1,48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 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358억 원 내에서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을 33%에서 34%로 늘리고 9급을 7.5%에서 6.5%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급이하 하위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으로 구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하여 구의회 정원 5명 (정책지원관 4명, 인사 전담인력 1명), 임대차신고제 전담인력 2명, 재개발 및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인력 2명, 공원관리 등 생태분야 전문 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변화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총액 내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서,

2022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358억 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322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0명의 인건비는 연간 5억 9,879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 참조)

【 불 임 】

2022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35,868,214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32,233,763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32,233,763
101 인건비	102,384,728
101-01 보수	80,040,251
101-02 기타직보수	9,444,23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900,247
204 직무수행경비	3,237,850
204-02 직급보조비	3,237,850
303 포상금	4,813,619
303-02 성과상여금	4,813,619
304 연금부담금등	21,797,566
304-01 연금부담금	17,813,720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983,846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9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미래 도시 영등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존속기한 개정(안 부칙 제2조)

-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

나. 입법예고: 생략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특구 및 의료특구 사업, 교육 정책 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1조에서 한시기구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바, 2021.10.12. 서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음.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9년부터 계획하였던 사업들의 기반이 조성되어 구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10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총 31개 조례 / 43개 조문(감사담당관 등 13개 부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단순 표현·자구의 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2022.1.13. 시행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31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21.1.1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부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6. 개별 조례별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군·구의 경우 2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이에 인용조문을 현행 법 제16조에서 개정 법 제21조로 개정하고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음. 또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현행 조례에 150명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는 개정하지 않았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u>19세 이상의 주민</u> 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u>18세 이상의 주민</u>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의 위임 대상에서 구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별표의 제2호가목의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복직 사무를 삭제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p> <p>①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p>	<p>제150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p>

<p>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p>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제161조(공공시설) ① ·②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

<p>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p>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5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p>	<p>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현행과 같음</p>

<p>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p>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제161조(공공시설) ① ·②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p>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p>	<p>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p>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p>	<p>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p>

<p>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82조(회의의 질서 유지)</p> <p>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p>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p>	<p>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 ⑥ 현행과 같음</p>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제126조(직속기관) 현행과 같음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현행과 같음

제128조(출장소) 현행과 같음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현행과 같음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현행과 같음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하부행정기구) 현행과 같음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현행과 같음

<p>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의회 인사권이 구청장에서 의장으로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삭제하였음.

현행법	개정법
<p>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p>	<p>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 게 위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p>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u> <u>(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u> 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자 주민조례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
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을 제정하였음.
 - 주요 변경사항은 조례청구 가능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또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청구요건
또한 완화되었으며, 영등포구의회 소관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중 제21조(연서주민의 수)는 새로 제정할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하며 구청장 소관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	개정법
<p>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p> <p>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p>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p>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 마. 생략</p>	<p>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p> <p>가. ~ 마. 생략</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법	개정법
<p>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p> <p>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p>	<p>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제161조(공공시설) ① · ② · ③ 현행과 같음</p>

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⑥ 현행과 같음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법	개 정 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로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